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합5280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20428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가합528054 판결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정필규

피 고 1. B

2. C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경희, 권오준

변 론 종 결 2021. 6. 4.

판 결 선 고 2021. 8. 27.

주 문

1. 피고 C,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7,0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2. 1.부터

2020.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2019. 7. 18.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7,071,200원¹⁾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9. 3. 29.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2 목록 기재 주권을 피고 B에게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B의 관계

1) 피고 C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통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E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 C과 2018. 1. 25. E이 발행하는 신주 50만 주를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명의로 인수하되, 1년 후 원고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E에 투자한 투자자이다.

3) 원고는 2018. 11. 22. 피고 C으로부터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명의의 E 주식 250만 주와 피고 B이 소유한 E 주식 50만 주를 2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C은 2019. 1. 30. 원고에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F 명의의 E 주식 100만 주에 대한 증권카드와 포기각서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 B도 원고에게 E 주식 1,274,046주의 증권카드와 포기각서를 제공하되 피고 C이 위 의무를 다하는 경우 피고 B은 자신 소유의 E 주식 포기각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나. 피고 C, B과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식양수도계약

1) 피고 C은 2019. 2. 1. 피고 C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200만 주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22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당일 계약금 2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2. 28. 중도금 3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F 명의의 E 주식 30만 주를 양도하였다.

2) E에 대한 거래정지 결정이 있음에 따라 피고 C, B과 피고 D은 2019. 3. 29.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변경하여 이미 양도한 E 주식 30만 주 외에 피고 C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125,000주와 피고 B 소유의 698,663주를 피고 D에 양도하고 피고 D은 이미 지급한 52억 5000만 원외에 잔금 32억 9465만 원을 2019. 6.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변경계약’이라 한다).

3) 피고 B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하기로 정한 E 주식 698,663주 중 2019. 6. 28. 381,776주, 2019. 7. 18. 154,584주를 각 피고 D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300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C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 C이 위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F 명의의 E 주식 100만 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C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 D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 C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2) 피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E 주식 300만 주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피고 C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50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9. 1.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매매 대금 지급 기한을 2019. 3. 29.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각서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갑 제2, 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9. 1. 30. 원고에게 F 명의의 E 주식 100만 주에 대한 증권카드 및 포기각서를 2019. 2. 1.까지 제공하기로 한 사실, 피고 C은 2019. 2. 1. F 명의의 주식 100만 주를 피고 D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30만 주를 피고 D에 양도한 사실, 피고 C이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주식 100만 주를 양도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서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F 명의의 E 주식 100만 주의 증권카드 및 포기각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C이 위 E 주식에 관하여 피고 D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한 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의 전제가 되는 채무의 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각서의 효력도 소멸되어 피고 C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C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피고 C이 이행거절을 명백히 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19. 2. 1. 당시의 E 주식 100만 주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19. 2. 1. 당시 E 주식의 종가가 9,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인 E 주식 100만 주의 시가 상당액은 원고가 구하는 2,907,071,200원을 초과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907,071,200원 및 피고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 약정을 한 사실 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민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의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무 이행을 해제조건으로 E 주식 1,274,046주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 D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E

주식 536,360주를 피고 D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 되어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피고 C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의 강압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는 피고 B의 궁박을 이용하여 원고가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피고 B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피고 C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 소유의 주식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여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갑 제2, 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9. 2. 1.까지 원고에게 E 주식 1,274,046주의 증권카드와 포기각서를 제공하되 피고 C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F 명의의 E 주식 1,000,000주를 양도하면 피고 B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19. 3. 29. 피고 D에 698,663주를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위 주식 중 536,360주를 피고 D에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위 각서에서 E 주식 1,274,046주의 증권카드 및 포기각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이는 피고 C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2019. 2. 1.까지 원고에게 E 주식 1,274,046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B은 위 E 주식 중 536,360주를 피고 D에 양도함에 따라 피고 B의 위 주식 양도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양도 의무 전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위 536,360주를 초과하는 나머지 주식의 양도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14호증, 을다 제1, 5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피고 D에 2019. 6. 28. 381,776주, 2019. 7. 18. 154,584주를 각 양도한 사실, E 주식은 2019. 3. 18.부터 거래정지 상태이며 거래정지 당일 종가가 5,420원인 사실, 피고 D은 거래정지 이후인 2019. 3. 29. 피고 C, B으로부터 E 주식을 주당 7,604원에 매매하기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변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이행불능에 빠진 시기는 피고 B이 피고 D에 E 주식을 최종적으로 양도한 2019. 7. 18.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정지 당일 E 주식의 종가가 주당 5,420원이고 피고 D은 거래정지 이후인 2019. 3. 29. E 주식을 주당 7,604원으로 평가하였음을 고려할 때 2019. 7. 18. E 주식의 시가가 주당 5,420원 이상임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2,907,071,200원(= E 주식 536,360주 X 5,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은 피고 B 소유의 위 주식에 담보가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주식에 담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금 2,907,071,200원 및 피고 B의 채무가 이행불능된 2019.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 B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 D에 E 주식을 양도한 때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 약정을 한 사실 또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민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이 공박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8. 11. 22. 원고에게 자신이 지배하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E 주식을 매도하면서 피고 B의 E 주식 50만 주를 함께 매도하려 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D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이 대신 E 주식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할 때 피고 B이 피고 C과 무관한 관계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자신의 E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참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21. 피고 C에게 2018. 11. 22.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 또는 증권거래소에 조회 공시를 요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고발장 초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 C, B에 대하여 원고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보장된 권리구제수단을 이용할

예정임을 알린 것으로서 해약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라 보기 어려워 이를 강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 B를 강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제조건 성취 여부

피고 B은 피고 C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채권을 갖고, 이 사건 각서에 따른 E 주식 양수채권을 가지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원고는 위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변경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 D은 피고 B이 양도한 E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C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 B에 갖는 E 주식 인도채권은 특정물 채권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변경계약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D은 선의자에 해당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보증채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좌측 하단에 한문으로 ‘보증인’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의 본문에 피고 B은 E 주식 ‘1,274,046주의 증권카드와 포기각서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B이 보증을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E 주식 1,274,046주를 대물변제받기로 정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E 주식 1,000,000주에 대한 보증채권까지 취득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대물변제 예약을 하면서 별도로 보증계약까지 체결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채권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 주식 양수채권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유하고 있는 E 주식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B이 피고 D에 E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피고 B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C,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 C, B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덕식, 판사 명선아, 판사 이유섭

별지 1

발행회사 : 주식회사 E

액면가 : 500원

주식수 : 698,663주

별지 2

발행회사 : 주식회사 E

액면가 : 500원

주식수 : 546,360주. 끝.

1)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D에 양도한 주식회사 E 주식을 546,360주로 계산하여 2,961,271,200원(= 546,360 X 5,42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D에 양도한 주식회사 E 주식이 536,360주(= 381,776주 + 154,584주)이므로 이는 오기가 명백하여 원고가 2,907,071,200원(= 536,360 X 5,420원)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원인이 불분명한데, 소장에서 2019. 2. 1.까지 E 주식 100만 주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 D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이 위 주식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행지체 중 이행거절에 의한 전보배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택한다.